

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 일람

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의 종류와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보건안전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9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하의 감염증에 걸린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감염확대방지의 관점에서, 출석정지가 되므로, 신속하게 학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은 자택에서 휴양을 하고,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분이 「휴양보고서」를 기입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염증의 종류		출석 정지 기간의 기준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한다.	
제 1 종	에볼라 출혈열, 크림·콩고 출혈열, 흥터, 남미 출혈열, 페스트, 마르부르크병, 라사열, 급성회백수염, 디프테리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조류 독감	치유될 때까지	
제 2 종	독감	발병 후 (발병 다음날을 1 일째로 한다) 5 일을 경과하고, 또한 해열 후 2 일을 경과할 때까지	
	백일해	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 또는 5 일간의 적절한 항균성 물질 제형에 의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홍역 (하시카)	해열 후 3 일을 경과할 때 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이하선, 턱밑샘 또는 설하선의 부종이 발열한 후 5 일이 경과되고, 또한 전신 상태가 양호해질 때까지	
	풍진	발진이 사라질 때까지	
	수두 (미즈보우소우)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인두결막염	주요 증상이 사라진 후 2 일이 경과할 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후 (발병 다음날 또는, 무병상태의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한 날의 다음날을 1 일째로 한다) 5 일을 경과하고, 또한 병상이 경쾌* 한 후 1 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 또한, 호흡기의 상태가 개선 경향인 경우	
	결핵	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수막염 균성 수막염	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제 3 종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프스, 팔라티푸스	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유행성 각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		
	기 타		용련균 감염증
			바이러스성 간염
			감염성 위장염
			마이코 플라즈마 감염증
			RS 바이러스 감염증
	감 염 증		기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증 ※폴 열·유행성 각결막염·위장염 이외
		전염성 홍반 (사과병)	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헬광기나	
		수족구병	
		대상포진	※결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기타, 감염증 () *1			
	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1 「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의 해설 <헤이세이 30년 3월 발행>」 공익재단법인 일본학교 보건회를 참조해 주십시오.